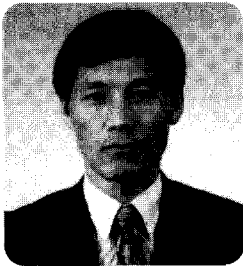


WIPO 중재 · 조정센터의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인가



임 유 근
〈특허청 제도과 서기관〉

1. 머리말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국내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권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각국 법원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소송 외적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소송절차가 과도한 비용소요는 물론이고, 최종해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걸리게 되어 분쟁당사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송 외적 절차에는 크게 중재(Arbitration)와 조정(Medi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의 선정에서부터 조정결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서 직접 관장이 가능하여 조정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고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공률도 높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정제도가 특별히 고정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차에 관한 불확실성이 많아서 실제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분쟁당사자가 지적재산권 분쟁조정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WIPO 중재 · 조정센터에서 발간한 조정제도 안내서를 중심으로 WIPO 중재 · 조정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그 절차를 중심으로 가능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WIPO 중재 · 조정센터

WIPO 중재 · 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는 1994년도에 제네바에 있는 WIPO 사무국 소

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개인 간의 국제 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센터는 국제적, 독립적, 중립적인 기구이며, 국제 분쟁해결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의하여 그 운영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절차는 조정, 중재, 약식 중재, 조정 및 중재 등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근거규정으로서 WIPO 조정규칙, WIPO 중재규칙, WIPO 약식중재규칙이 있다.

이러한 중재, 조정절차는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 법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법, 장소, 언어로도 중재 또는 조정이 가능하다.

동 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중재위원이나 조정위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고,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센터는 중재 또는 조정위원의 명단을 그들의 약력과 함께 갖고 있다. 이 명단은 지재권 및 중재·조정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 1월 1일 현재, 61개 국적, 650여명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동 센터는 분쟁중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지적재산권의 중재 또는 조정을 주제로 하는 회의개최, 중재위원을 위한 워크샵, 조정에 관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WIPO 본부인 제네바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3.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제도

① 조정제도(Mediation)란 무엇인가?

조정제도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와는 다르게 그 절차나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조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오로지 당사자가 원할 때만 진행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이 어떤 결정을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조정위원은 판사나 중재위원과 다르게 판정권이 없고 오로지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임무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화해 도움 모델과 평가조정 모델을 들고 있다. 화해도움 모델(Facilitative Mediation)은 조정위원이 양당사자가 분쟁과 관련된 서로의 관점, 입장, 관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방식이고, 평가조정 모델(Evaluative Mediation)은 조정위원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공하고 양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절차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조정절차의 비밀유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양당사자가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제안, 자백, 견해, 의견제시 등이 비밀로 유지되고 이것들이 어떤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 또는 다른 양태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중재와 조정의 차이

중재와 조정의 차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조정제도가 훨씬 덜 격식적인 절차로서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를 직접 관여하여 결정함은 물론 당사자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양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조정결과가 정하여 진다.

반면 중재제도는 중재위원이 적용할 수 있는 법령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중재 판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절차(Interest-Based Procedure)로 볼 수 있고 중재제도는 권리를 기반으로 한 절차(Rights-Based Procedure)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중재와 조정에 임할 때 중재는 담당 중재위원을 납득시켜야 하나 조정은 서로 상대편 당사자가 동의하여야만 화해에 이를 수 있으므로 상대편 당사자를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어떤 경우에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분쟁조정제도는 다른 해결방안인 소송 또는 중재에 비하여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처음 분쟁조정 신청에서부터 양당사자가 화해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 전과정을 직접관장

이 가능하여 필요시 조절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세부내용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기업이미지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분쟁발생 초기에 조정으로 해결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서로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게 되어 장차 당사자간에 실시권의 설정, 판매권의 허여, 공동연구·개발 등 호의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분쟁은 거의 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 조정이 유용한 경우로서는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관련된 상거래관계 분쟁이 적절한 대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로서 흔히 신청되는 예를 들면, 특허, 노하우, 상표사용권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멀티미디어, 판매계약 관련 분쟁, 조인트 벤처, R&D 계약 관련 분쟁, 기타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회사의 합병 및 획득에 관련된 분쟁 등이 있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위조 또는 해적행위는 당사자간에 화해가 곤란하여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사자가 단순히 조정을 통해서 특정권리의 무효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등 객관적인 의견만을 구하는 것이나 장래에 일반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하거나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적

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WIPO 중재·조정센터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조정제도 본래의 장점 이외에도 동 센터는 지재권분야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국제상 거래 분쟁조정 경험 뿐 아니라 지재권 분야의 기술, 상거래 법적인 문제에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조정위원을 확보하고 있어 국제 지재권 분쟁을 보다 독립적,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 초기단계에 당사자 간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때는 물론이고, 중재나 소송계류 중 어느 때라도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정회의에서 사용할 언어는 한개언어 또는 두개언어 및 통역을 선택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통역에 따르는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물론이다.

동 센터의 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정해 놓은 형식은 거의 없고 양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협의하여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결정하여 진행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

양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합의서의 제출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시된 설정계약서 등에 분쟁발생시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거나 또는 분쟁발생후에 양당사자가 조정으로 해결하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대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under,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of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formation, validity, binding effect, interpretation, performance, breach or termination, as well as non-contractual claims, shall be submitted to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WIPO Mediation Rules. The place of mediation shall be...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mediation shall be...”

〈분쟁발생후에 양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합의하는 경우〉

“We, the undersigned parties, hereby agree to submit to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WIPO Mediation Rules the following dispute :

[Brief description of the dispute]

“The place of mediation shall be...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mediation shall be...”

② 조정의 시작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센터에 조정신청서 (A Request for Mediation)를 제출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조정신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당사자 설명, 대리인 등 인적사항과 분쟁내용의 기술서 및 조정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은 법적효과를 구성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센터가 충분한 사건내용(관련된 사람, 조정의 대상 등)을 갖고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③ 조정위원의 선정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센터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위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한다(당사자들이 미리 지정한 경우는 다르다). 조정위원은 양당사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양당사자로부터 전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조정위원 지정을 위하여 센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센터가 몇 명의 가능성 있는 조정위원의 이름과 그들의 약력을 제공하여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양당사자가 조정위원 지정을 마무리 할 때까

지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센터는 조정회의 장소(보통은 조정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회의실, 기타 지원시설 등 필요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양당사자가 조정장소로 제네바를 선정하면 센터가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제네바 이외의 장소를 선택하면 적당한 회의실을 선정하는데 센터가 도와준다. 또한 센터는 조정위원 및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위원의 수수료(조정료)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조정위원의 기대 역할

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만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사건내용을 규명하여 가능한 합의안을 개발, 조언하므로써 양당사자가 합의하는데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고려한다.

- 조정위원의 자질

조정사건과 관련된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원하는 것인지 또는 조정기법이 좋은 사람을 찾는지를 고려한다.

- 조정위원의 수

단독위원 또는 복수로 특정분야(특정분야:기술, 법, 문화, 언어 등) 전문가 및 조

정전문가를 함께 지정하기를 원하는지 검토한다.

- 조정위원의 목적

필요한 국적소지자 또는 불필요한 국적소지자를 판단한다.

-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과거나 현재 업무 관련 동 사건과 자유롭지 못하거나 당사자 일방과 특정의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④ 조정위원과 당사자간의 최초 접촉

조정위원이 선정되면 당해 조정위원은 양당사자와 협의(주로 전화이용)하여 조정진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류 등을 첫 조정회의(예비회의) 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⑤ 예비회의 개최

조정위원과 당사자간의 조정을 위한 예비회의에서는 조정위원이 조정 진행을 위하여 기본적 규칙을 정한다. 특히 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조정회의를 진행할 때 양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것인지 각 당사자 별도로 회의를 가질 것인지를 합의하고 양당사자가 WIPO 조정규칙에서 정한 "비밀유지 규정"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제출을 요청한다.

⑥ 조정회의의 개최

분쟁사안의 경제적 중요성, 복잡성에 따라 분쟁조정회의가 하루, 며칠 또는 상당한 긴 기간 이루어 질 수 있다. 조정위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정절차에서 지원 및 조정역할을 한다.

- 사건과 관련된 주요사안의 규명과 자료의 수집
- 각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견지하고자 하는 입장의 확인
- 양당사자의 관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정안의 개발
- 양당사자의 관심사항에 비추어 각 조정안의 평가
- 화해성립 및 합의서 작성

조정회의를 통하여 비록 모든 분쟁이 화해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결방안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에 있어서 소송, 중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방안보다는 더 나은 조정안에까지는 이를 수 있다.

동센터의 분쟁조정 관련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정신청료(센터)

조정신청료 : 분쟁가액의 0.10%로서 최고
US \$10,000까지

○ 조정료(조정위원)

조정료는 조정위원의 경험뿐 아니라 사건의 경제적 중요성과 복잡성 등에 따라 시간별 또는 일별로 요율을 협의하여 정하는데 WIPO 조정 수수료 규정은 다음과 같이 상·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최소한 (\$)	최대한 (\$)
시간당	300	600
일 당	1,500	3,500

※ WIPO 조정규칙 제 24조에는 조정비용(신청료, 조정료, 기타 비용)은 양당사자가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비용의 부담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동 센터는 조정에 있어서 행정당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을 선정, 지명하는데 도와준다.
-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료를 결정한다.
- 조정에 따른 예상비용을 각 당사자로부터 수납하고 조정료, 시설지원에 따른 비용, 통역비용을 지불한다.

- 제네바에서 조정회의가 열릴 경우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회의가 제네바 이외 장소에서 개최되면 적당한 회의실을 선정하는데 도와준다.
- 기타 번역, 통역, 비서업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WIPO 중재·조정센터의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그 취지 및 절차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조정신청전에 당사자간에 조정합의의 필요여부 및 조정비용의 지불여부에 차이점이 있고 조정절차나 결과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분쟁조정제도가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기업들이 현지의 법원이나 중재·조정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WIPO 중재·조정센터와 같이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적재산권 전문 중재·조정기구의 이용을 늘리는 것도 세계시장에서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감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특9712